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산물질병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거래기록의 작성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3088호, 2022. 12. 20, 공포, 2023. 2. 28, 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74호, 2022. 12. 20, 공포, 2023. 2. 28, 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물거래기록의 작성·보존 요구, 수산물거래기록의 대상지역 고시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, 수산물질병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제8호의2, 제9호의2, 제10호의2, 제10호의3,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, 제15호의2, 제15호의3,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9호 중 “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”를 “법 제57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	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<u>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·보존 요구, 수산생물거래기록의 대상지역 등의 고시</u>	<삭제>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9의2. <u>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</u>	<삭제>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10의2. <u>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의 고시,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정검역물 처리의 승인</u>	<삭제>
10의3. <u>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 위생조건의</u>	<삭제>

고시

11. ~ 14. (생 략)

14의2.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
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
행 및 관리

14의3. 법 제37조의10제6항에
따른 진료부에 관한 사항의
보고 요구, 수산질병관리원 또
는 양식장의 출입·조사

14의4. 법 제37조의15에 따른
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 및
지휘·감독

14의5. 법 제37조의18에 따른
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
수료 조치

15. (생 략)

15의2.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
제6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

15의3.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
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
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
의 지원

16. (생 략)

16의2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
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및 수
입검역에 필요한 조치의 지시

11. ~ 1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15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1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u>16의3.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 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 관리원에 대한 지도·명령 및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 황, 진료부, 처방전 등의 검사</u> 17.·18. (생략) 19. <u>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같 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·징수</u> ③ ~ ⑥ (생략)	<u><삭 제></u> 17.·18. (현행과 같음) 19. <u>법 제57조제2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25